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01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기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안 제21조제1항 삭제)

- 존속기한 : '21. 8. 19. ~ '22. 8. 18.(1년) ※ 최초설치 : '16. 8. 1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2. 5. 9. ~ 5. 13.)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1조(한시기구) ① 문화시설 건립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문화본부에 한시적으로 문화시설추진단을 두며, 문화시설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삭 제></p>
<p><u>1. 미술관 등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u></p>	<p><삭 제></p>
<p><u>2. 박물관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u></p>	<p><삭 제></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기구 정비(폐지)는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유진 (☎ 2133-6729)